
- 인재유치·지역발전·포용사회를 위한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2026. 3.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순 서

I . 추진 배경	1
II . 그간 정책의 한계	1
III . 이민정책 환경 분석 및 패러다임 전환	2
IV .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비전	5
V . 핵심 추진과제	6
1.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이민정책 도입	6
1) 경제에 보탬이 되는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유치	6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2.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10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연구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12
4.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 보장	13
5. 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	15
VI . 추진기반(조직·재원) 마련	19
〈참고〉	
1. 외국인 유입과 정책 전개과정.....	20
2. 주요 통계.....	21

I. 추진 배경

□ '저성장 시대, 축소 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설계 필요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동포 포함)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 새로운 요구가 제기

대통령 제80차 UN 총회 기조연설('25.9.23)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 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주도해 갈 것

- '26년 체류외국인 300만('25. 12월 278만명) 돌파, 인구감소 충격 가시화*가 예상되는 2030년 진입 이전에 "지금"이 미래전략 지도를 마련할 골든타임

* 생산연령인구가 '20년 3,730만명에서 '30년 3,417만명으로 약 313만명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30년대 중반 이후 고령인구 증가생산인구 감소로 상승(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포커스」 '24년 겨울호)

⇒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는 **중장기 이민정책 전략**을 **"지금"** 제시

II. 그간 정책의 한계

◇ 그간 경제·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비자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해왔으나, 외국인력 도입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이민정책 역할 부족

- (울산 조선업 인력난) 사용자는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을 싼값에 직도입을 주장, 노조나 주민들은 내국인 일자리 침해, 임금하락, 본국 송금(소비 저조) 등을 이유로 반대

※ "외국인 50% 안돼...조선업종·노조연대, 울산 광역형 비자 확대 반대"('25. 8. 26. 뉴시스), "조선업 호황인데 지역은 불화...내국인 채용 확대·이주노동자 쿼터 축소"('25. 12. 22. 울산매일)

▶▶▶ "어느 국가에서, 몇 명을, 어떤 임금수준으로 유치하여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이민정책의 역할 부각

□ 단기적 관점에서 민원해소성 위주 정책으로 전략적 이민정책 추진의 한계

-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경제·산업계의 요구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저숙련 위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 ㄱ (저숙련인력 체류) ('07) 211,091명 → ('17) 295,196명 → ('25. 12월) 403,995명 ↗ 대폭 증가

ㄴ (전문인력 체류) ('07) 33,502명 → ('17) 45,685명 → ('25. 12월) 105,165명 ↗ 소폭 증가

- 중앙부처가 독점적으로 비자발급 대상·요건을 결정함에 따라 현장 수요자인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부족
- 현재의 조직·인프라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적정 이민자 도입에 대한 미래전략 지도(map)를 설계하기에 한계

□ 외국인 활용과 공존에 대한 국민설득·이해 증진 정책 미흡

-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공급'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관점은 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한계
- 국민이 이민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 및 이민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반이민정서 확대 우려*

* 이민을 통한 인구 문제 해결 여론(찬성 46%, 반대 44%) 비등('24. 한국리서치)

□ 통합 거버넌스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한계

- 우수인재 유치는 비자제도 개선 이외에도 기업문화 개선, 세제, 투자 환경, 교육 등 종합적 지원이 필수적이나, 컨트롤타워 없이 각 부처가 관련 정책을 분절적으로 추진하여 전문·기술인력 유입은 저조

III. 이민정책 환경 분석 및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1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 국내 이민정책 환경

- (외국인력 수요증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력부족 체감 심화 및 정주 적합성이 높은 외국인력 활용수요 증대로 취업비자 적용대상 확대

* '25년 상반기 노동력 부족인원 468,633명('25,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 고용이 어렵기 때문"(90.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건비 절감"은 3.2%에 불과('23.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최소 인력 부족 규모* 예측('30년 기준)】

(단위: 명)

구 분	전문직	準전문직	숙련기능직	비전문직	합 계
전 체 산 업	166,700	511,900	92,000	354,500	1,125,100
농 · 어 업	-	-	-	61,900	61,900
제 조 업	24,800	100,300	48,600	79,700	253,400
사회복지업	25,300	97,400	-	99,500	222,200
정보통신업	30,600	25,900	5,200	8,500	70,200

* '24년 법무부 연구용역(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계량분석 연구) 중 업종별 부족인력 규모를 최소로 가정할 경우의 규모

- (사회통합 요구증대) 이민자 수 급증, 이민 2세대 및 가족 단위 이주 증가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및 사회통합 필요성 대두
 ※ 체류외국인 ('07) 107만 → ('25. 12.) 278만 / 동반(F-3) ('20) 20,050명 → ('25. 12.) 75,684명
- (反이민정서 확산) 정주이민 증가에 따라 복지 부담·일자리 침해·문화 갈등 우려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도 강화
 ※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이민 확대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24, 문체부) : 찬성 48% vs. 반대 52%

□ 글로벌 이민정책 환경

- (인재경쟁) 전세계적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른 우수인재(중간기술* 인력 포함) 수요 증가로 한·중·일 포함 글로벌 필수인재 생탈전 격화
 * 대만,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중간기술 이민 단계 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
- (이민의 보수화) 난민·이민자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反이민정서 확산으로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이 보수화되는 추세
 ※ '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수백만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사회 갈등 심화에 따라 극우 정당 득세
- (한국 매력도 향상) 국제위상 강화 및 한류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도약*함에 따라 문화적 매력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로 부상
 * '24년 문화 영향력 부문 국가순위 7위(U.S. News & World Report)

2 새로운 관점 제시

- '성장시대'에 맞게 설계된 정책의 목표, 활용방안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각과 접근 필요

(과거) 성장시대	VS	(미래) 축소사회
3D 업종 단기노동력 공급자 (임시 체류자)	외국인을 보는 관점	소비·부가가치 창출하는 국가성장 자산(지역주민)
해외에서 직도입	외국인 유입 방식	국내 대학을 통해 학력·기량이 검증된 외국인 우선 활용
국가지원과 외국인 선택	외국인의 사회통합	국가가 지원하되, 외국인의 책임성 강화
중앙정부·국내 이슈, 정책 설계 자체에 중점	이민정책을 보는 관점	중앙-지방·국제 이슈와 연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해석과 인식 강조
공무원이 일하기 편한 방식	제도 운영방식	기업인 등이 일하기 편한 방식

□ 이민정책의 국가전략

○ “어떤 이민자를 유입해야 하는가?”

- (전략1) 국가단위 정책에서 지역단위 정책으로 전환하여 젊고 우수한 “지역 정주형 경제활동인구” 유치
- (전략2) 지역연계형 관광 비자 개선으로 지역 소비인구 확충
- (전략3) ①자동화가 어렵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돌봄 등)은 집중 양성·유치, ②대체가능성이 높은 직종은 자동화 추이에 따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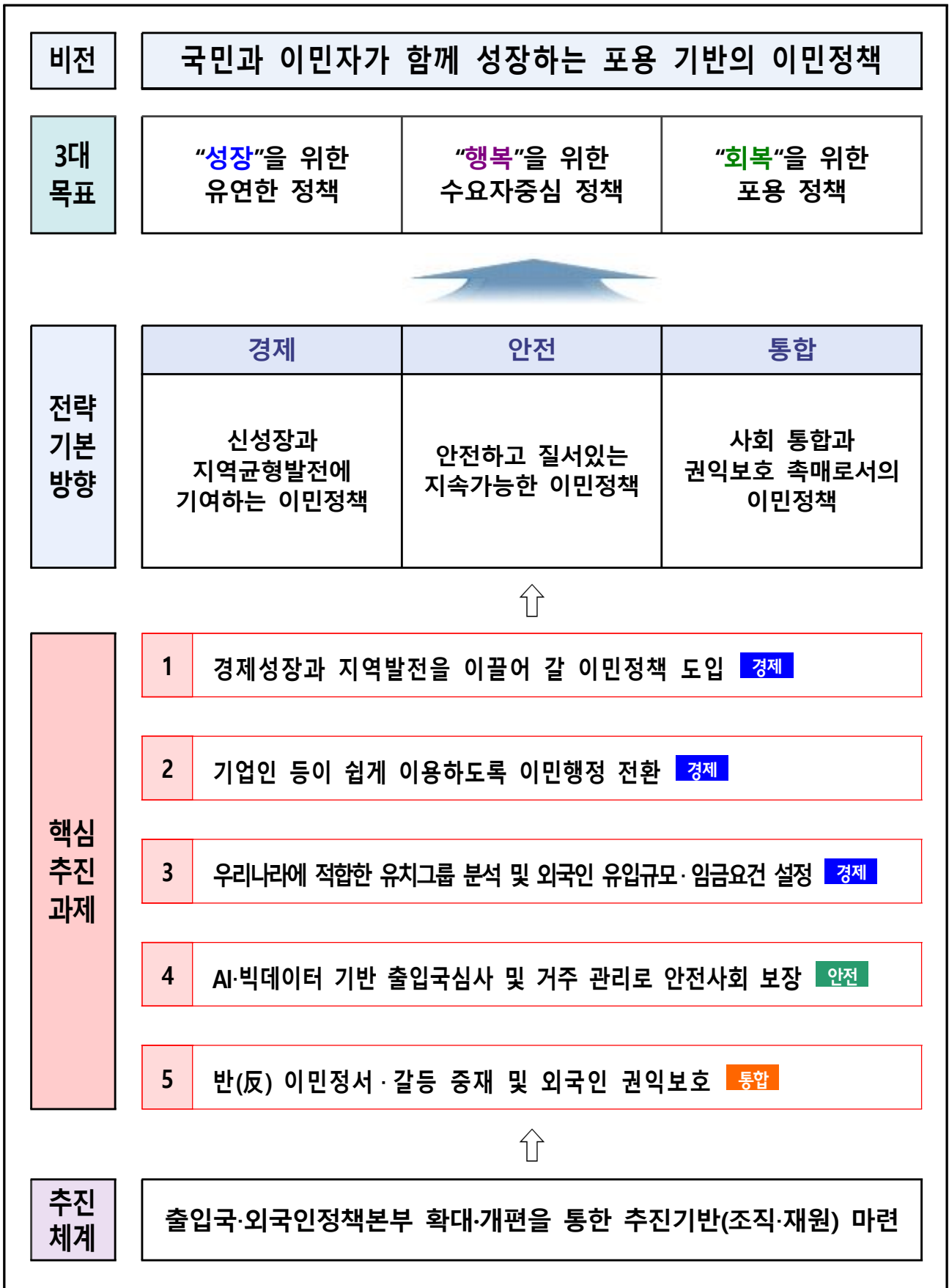
○ “이민자를 어떻게 유입해야 하는가?”

- (전략1)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에 통합력’이 높은 유치그룹 분석·평가 및 유입규모 산정(경제적 효과 측정)
 - ※ 연간 외국인 유입 규모를 산출하고 비자발급 요건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 이민자 유입의 속도와 규모 조절 가능
- (전략2) 민간 전문역량(헤드헌팅 등)을 활용하여 핵심인재 신속 유치
- (전략3)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교육과정을 거쳐 송출비용이 없고 검증된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 등) 우선 활용

○ “다른 민족·문화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 (전략1)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상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정비하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에 대한 의무와 책임 부과
- (전략2) 이민의 효과를 공개하고, 국민과 이민자 간 갈등중재 체계 마련

IV.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비전



V. 핵심 추진과제

1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이민정책 도입

① 경제에 보탬이 되는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유치

1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최고 우수인재 유치 지원

그간의 정책 상황

◇ 첨단산업 분야 등 국가 간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한국 AI 인재 유치 매력도 35위..."美·中 유치 경쟁에 이탈 가속화"(25.6. 아주경제)

※ (국정과제)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 [국정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 필요(선진연구자 200명 등)
- ▶ [국정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and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석학, 신진연구자 등을 유치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 등 국내 정착 지원**

- (개선) 최고 우수인재 유치, 유출방지, 정착 지원을 위한 기존 비자제도 개선
- (톱티어 확대) 과학기술 등 연구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체류 혜택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정착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계한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 분야 확대로 다방면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 * (요건) ①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② 세계 500대 기업에서의 3년 이상 근무 포함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 ③ 국내기업과의 고용계약 체결, ④ GNI 3배 이상인 자

현재	확대
▶ 첨단산업 분야(산업부 협업) · 반도체 · 이차전지 · 바이오 · 디스플레이 · 인공지능(AI) · 미래차 · 로봇 · 방산	▶ 과학기술 연구 분야(과기정통부 협업)

※ '26.2월 현재 톱티어 비자 총 20명 발급→ (목표) '30년 총 350명(첨단산업 250명, 과학기술 100명)

- (K-STAR* 비자트랙 신설) 5개 대학** 출신의 과학기술 인재만 대상이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일반대학 등 32개로 확대한 'K-STAR 비자트랙' 신설로 외국인 우수인재 4배 이상 추가 확보(매년 100명→매년 500명 이상)

* K-STAR :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K-STAR 비자트랙 주요 혜택 >

-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 취득까지의 소요기간 최소 3년 단축
-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 허용

② 신(新)성장 동력으로서의 유학생 활용

현장의 목소리

- ◇ 기존 외국인력 제도의 한계로 산업계에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술(능)직 인력 수요 제기
 - 고용허가제(E-9)는 저학력·저숙련 인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에 한계가 있음
 - 숙련기능인력 제도(E-7-4)는 고용허가제 도입인력에서 전환되어 숙련도는 쌓였어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 ※ 고용허가제(E-9) : 342,211명, 숙련기능인력 제도(E-7-4) : 38,110명
- ◇ 기업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대안으로 유학생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학 단계에서부터 유학생에 대한 관리* 및 사회통합 지원 유도정책 필요
 - *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 후의 취업분야 등 범정부적으로 파악 필요
 - ※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생존과 성장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증했지만 질적 관리 부실 등의 과제가 떠오름”(‘25. 7. 주간한국)

- (개선) 국내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사회 적응력을 갖춘 유학생을 최대한 활용
 - (K-CORE* 비자 신설)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middle-skill) 수준의 외국인력**을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 신설
 - * K-CORE(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E-7-M) :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이 지방 기업 취직 시 취득하는 취업비자로, 지역산업의 핵심(Core) 인력을 의미
 - ** 자동차 제조, 정밀기계 등 전문기술학과를 지정(‘26.2월 현재 16개)해 중간기술인력 양성
 - (사회통합 우수대학 우대) 유학생의 재학 중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해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 ⇒ 우수 학부(학과)에 대해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각종 비자혜택 부여
 - *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대학연계 과정 운영 여부, 유학생 학업·취업성과 등 사회통합 성과 평가

③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전문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등) 확보

그간의 정책 상황

◇ 요양보호사 등 수요의 급증은 외국인 도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 비자체계 내에서는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적인 상황

※ "'30년 기준 사회복지 인력은 최대 약 44.4만명 부족 예상'"(24. 법무부 연구용역)

○ (개선)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외국인 돌봄인력 비자제도' 확대·개편 추진

- (요양보호사 학위과정 운영)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여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 확대)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시, 요양보호사(E-7-2) 자격변경·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통해 전문 돌봄인력 도입 저변 확대 추진

※ 요양보호사(E-7-2) 가능 대상 : (現)유학(D-2), 구직(D-10)자격 → (改) 국내 체류외국인 (F-1, F-3 등)으로 확대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우수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병행하는 지역이민정책 도입

그간의 정책 상황

◇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의 일부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을 운영 중이나, 외국인력 유치와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이민정책 확대 도입 필요

※ **현행 지역기반 비자정책**

-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유학생(D-2), 숙련기능인력(E-7-4) 등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78개 기초지자체, 5,072명 배정)
- (광역형 비자)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자유건 설계에 참여하여 지역의 핵심산업 필요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15개 광역지자체, 6,610명 배정)

○ (개선)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오고(학업 등), 일할 수 있고(취업), 살 수 있게(정주)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설계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유입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숙련 외국인의 효과가 큼(25. 국가정책연구(임태경))

- (학업) 유학생을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지역이민 프로그램 설계
- (정주) 우수인재, 동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각 부처별 정책수단과 연계해 취업·생활 정보, 사회통합 교육, 보육, 자녀교육 등 안정적 정착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개선

현장의 목소리

- ◇ 인구감소지역*에서 내국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현행 제도상 외국인 고용요건**도 충족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 발생

* '25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 (현행 지역특화형(F-2-R) 외국인 고용기업 요건)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함

-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방안 마련
- (특례고용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업력(사업 지속기간), 근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기준을 설정하되, 2년간 한시적 시범 도입

③ 농·어업 분야 숙련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현장의 목소리

- ◇ 1차 산업은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분야의 핵심인력이지만,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8개월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숙련도를 쌓은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길 희망하는 상황

※ 계절근로자 '26년 상반기 배정 현황 : 142개 지자체 98,829명 배정

- ◇ 농촌의 고령화, 농업의 산업화 등으로 인한 기업형 농업으로 전환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인력공급 방식 전환 필요

- (개선)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농·어업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 후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비자」 개편
 ※ (예시) 계절근로(E-8) → 숙련기능 농·어업 분야 장기자격으로 전환
- (계절근로 지역순환제)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순회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확대
 ※ ('25. 10.) 포천시·의령군 2곳 시범사업 선정 → ('26.상반기) 10곳 내외 추가 선정 예정

2 기업인 등이 쉽게 이용하도록 이민행정 전환

① 기업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자체계 개편

그간의 정책 환경

◇ 현재의 취업 비자코드(10종, 39개)는 **나열식 구조로**, 체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산업계·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산발적으로 신설·운영**

※ 현행 취업비자 교수(E-1) ~ 선원취업(E-10) 체계는 숙련 등 일부 수준별 구분은 있으나, 체류유형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님

구분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대상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특정 활동	계절 근로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 (개선) 복잡한 **현행 취업비자(10종 39개) 체계를 단순화**하여 기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취업비자(E계열)를 기술(숙련)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개편**

【취업비자 체계 개편 예시(안)】

산업별 숙련도	ICT·디지털	의료·복지	법률·교육	제조	서비스	문화·예술
고숙련 (Highly-skilled)	연구원(E-3), 정보통신 관리자(E-7-1),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E-7-1)	의사(E-5), 간호사(E-7-1)	변호사(E-5), 법학 교수(E-1), 교육 관리자(E-7-1)	기계공학 기술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E-7-1)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E-7-1)	행사기획자, 디자이너(E-7-1)
중숙련 (Medium-skilled)	-	의료코디네이터, 요양보호사(E-7-2)	회화강사(E-2)	용접공·도장공(E-7-3)	운송서비스, 조리사(E-7-2)	관광통역 안내원(E-7-2)
저숙련 (Low-skilled)	-	-	-	고용허가제(E-9-1)	고용허가제 호텔 음식점 등(E-9-5)	-

② 디지털 비자 신청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현장의 목소리

◇ 기업인 등이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는 **불편**, 비자·체류허가 등 신청 시의 **복잡한 제출서류** 준비로 비자 신청 등에 **어려움** 발생

- 온라인 사전방문 예약제를 통하더라도 성수기(학기 시작 등)에는 최대 2달 이상 대기

※ "민원 서류 반려에도 영어 안내 부재", "외국인 민원 대기줄이 명품 매장 수준", "방문 예약해도 하염없이 대기" 등 민원 불편 사례 빈번 언론보도(한국일보, JTBC, MBC 등)

※ 전문인력인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초청 시 **크게 5종(초청사유서, 학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특히 **고용 필요성 입증과 서류준비에 어려움**

⇒ 공무원이 편한 행정에서 **"기업인 등이 일하기 편한 이민행정"**으로 전환

- (개선) 대민서비스(Hikorea, Visa Portal, Socinet 등)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 및 AI 활용 이민행정 서비스 구현
- (민원 편의 향상) 방문민원 중심에서 전자민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 AI 다국어 지원 기능을 접목한 비자·체류 민원 안내 및 24시간 민원상담 가능한 지능형 챗봇 서비스 제공
- (신속·정확한 행정) 디지털 사전스크리닝(Pre-Screening), AI를 분류·심사에 활용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속·정확하게 비자·체류허가 심사
 ※ 현재는 직원이 종이 서류를 수작업으로 검토·심사 →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청서 오류, 범법기록, 체류이력 등 이상패턴 탐지, 심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 업무효율화
- (출입국 대행을 통한 신속 처리) 서류준비(1차검토) 및 전자적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출입국 대행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최종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신속 처리
 ※ '25. 12.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등록된 출입국 대행기관은 3,725개(행정사 3,360, 변호사 365)

③ 전문 헤드헌팅 기관 활용 및 국적신청 대리허용을 통한 핵심인재 유치

현장의 목소리

◇ 기업에서는 전문분야 외국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있어도 발굴에 한계가 있고, 우수인재가 국적취득을 희망해도 서류준비 등에 어려움을 호소

※ “글로벌 인재 채용 어려워요...기업 80% 해외채용 실패 또는 시도조차 못해”(‘25. 4. 한경)

※ 최근 3년간 귀화 신청 현황 : (‘22.) 18,079건, (‘23.) 18,736건, (‘24.) 19,470건

- (개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발굴을 위한 민간의 전문역량 활용 방안 마련
- (유치 전담기관)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 해소 및 해외 우수인재의 신속 유치를 지원할 헤드헌팅 기관 등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 시범 도입
 ※ 인력소개업체 중 재정 건전성,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 여부, 계약의 투명성 등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지정·등록해 공적 관리·감독 체계 구축
- (국적신청 대리허용) 과학자, 스포츠 선수 등 분야별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변호사 등 공인된 사람이 국적을 대리·대행 신청할 수 있도록 국적법령 개정
 ※ (현행) 귀화신청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변호사 상담을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그룹 연구 및 외국인 유입규모·임금요건 설정

1 우리나라에 통합 능력이 높은 유치그룹 분석 및 활용

그간의 정책 환경

◇ 외교관계, 무역활성화, 통합·적응 능력 등의 장기적 국가 전략 없이 산업계·교육계의 수요에 따라 단기 대응식 외국인력 등 유치

○ (개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치 대상 그룹 분석·평가

- (활용)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인재형, 유학형, 투자교류형, 문화교류형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우수인재, 외국인력, 유학생 등 유치에 활용

2 빅데이터에 기반한 외국인 적정유입 규모 산정 및 경제효과 측정

그간의 정책 환경

◇ 비자종류별(숙련수준별) 인력 부족 규모와 외국인 유입 영향 등 분석을 바탕으로 취업비자에 대해 연간 적정 비자 발급규모 공표

※ '26년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

- ① (기능) 자동차판금·도장원(E-7-3) 330명, 자동차 부품제조원(E-7-3) 100명, 도축원(E-7-3) 150명, 요양보호사(E-7-2) 400명, 항공기(부품)제조원·송전 전기원(E-7-3) 300명, 숙련기능인력(E-7-4) 33,000명
② (단순) 계절근로(E-8) 109,100명 / 비전문취업(E-9) 80,000명 / 선원취업(E-10) 23,300명

○ (개선) 비자 유형별로 유입규모 산정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유입이 국내에 미치는 각종 경제적 효과 등 분석

- (유형) 취업비자 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 대상자 추가

※ (현행) 취업비자 → (추가 유형) ① 취업비자, ② 유학연수, ③ 가족이민, ④ 사업투자, ⑤ 관광

- (활용방안) 범죄·불법체류 등 사회적 비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파악 및 적정 유입규모 재산정

※ '25. 11월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등)에 따라 외국인 적정 유입 규모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 중

③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현장의 목소리

◇ 현재 전문·숙련 취업비자별로 최저임금, 소비자 물가지수, 직종별 월 임금 총액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요건으로 임금수준을 설정*** 중

* '26년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 전문인력(E-7-1) 연 3,112만원 이상, 준전문인력(E-7-2) 및 일반기능인력(E-7-3) 연 2,589만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연 2,600만원 이상 등

- 외국인력의 유입이 국민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존재해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필요

** 조선업 외국인 직고용에 대해 지역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자국 숙련공 외면” 등을 사유로 반발(’25. 10. 연합뉴스)

- (개선)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임금하락 등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취업비자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임금요건을 설정·고시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칭}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한국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자 등 일부 내국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21. 김혜진 등, “Wage and employment effects of immigr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 ’25. 11월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등)에 따라 사증 발급규모 산정을 위해 설치·운영할 ‘자문위원회’에서 취업비자 임금요건 설정을 추가하여 연구·검토

※ (영국) 정부의 독립 자문기구로 외국인근로자 정책과 관련된 임금·고용 기준을 내무부 장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를 운영

- (절차) 노사정 각 기관으로부터 차년도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민·노동경제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연구·조사 결과 등을 고려 ⇒ 매년 임금요건 설정 및 고시

4 AI·빅데이터 기반 출입국심사 및 거주 관리로 안전사회 보장

① AI·생체인증 등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형 출입국심사 도입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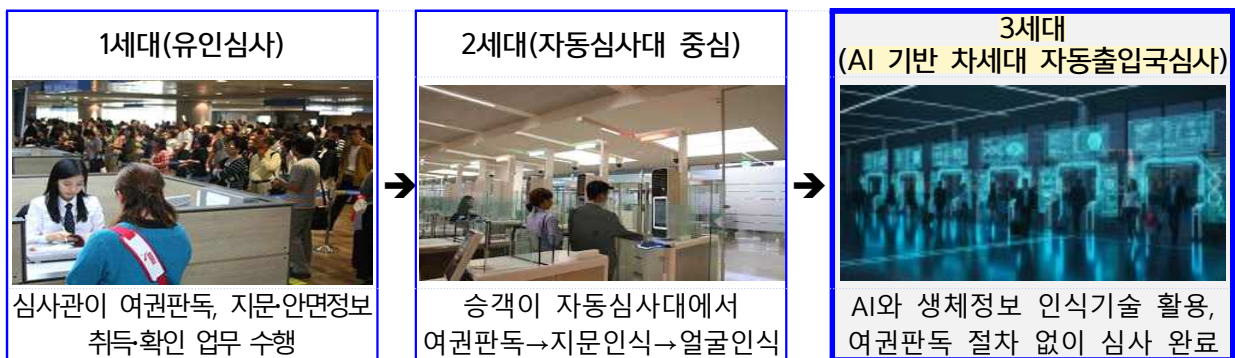
◇ 방대한 승객정보를 수동분석하거나 제한된 분석시스템으로 처리함에 따라 위험인물 선별의 신속성·정밀성 부족, 출입국자의 폭발적 증가로 공항만의 혼잡도, 대기시간 증가로 여행객 불편 심화

(현행 사전분석 시스템) ①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무사증 입국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인적사항 여행정보를 입력, 사전에 여행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 ②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 항공사에서 탑승객 명단을 사전에 전송받아 승객정보 분석, 입국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 (개선) 연간 출입국자 수 1억 명 시대에 대비하여 AI·생체인증 기반 위험 평가와 적격성 심사를 도입

※ '30년 인천공항 국제여객수요 1억2천만명 예측(국토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 (AI 기반 사전심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사전심사시스템(K-ETA, APIS)을 고도화하여 입국외국인 위험도를 신속하게 분류, 고위험 외국인은 차단·정밀심사하고, 저위험 외국인에게 신속한 심사 제공
- (AI 기반 자동출입국심사)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여권판독 없이도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한 기술을 적용,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 제공



【해외 사례】

- ▶ (싱가포르) 사전등록자에게 여권판독이 필요없는 자동심사 전면 시행('24년)
- ▶ (UAE) 사전등록자에게 AI 기반의 여권판독이 필요없는 통로형 자동심사 도입('25년)
- ▶ (미국) 사전등록자에게 여권판독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과하는 SBE(Seamless Border Entry) 확대 시행('25년)

②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고용을 촉진하는 인증제 도입

그간의 정책환경

- ◇ 단속만으로 불법취업 규모를 줄이기는 물리적·인력적 한계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36.8만명에서 20만명 목표까지 도달하는데 약 9년('34년) 소요 예상
- ※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불법체류자...단속인력 1인당 1,000명('24.10. 머니투데이)
-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모범기업일지라도 불법취업자 고용주와 똑같은 대우(쿼터, 심사 처리기간 등)가 적용되는 불공정 구조(외국인력을 불법 고용한 불량기업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향)

- (개선) 기존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체류 등 법 위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로 전환
- (가칭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체류관리를 잘하는 성실기업에게 신뢰 등급(A 또는 B)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 신뢰에 기반한 외국인력 합법 고용 관리 분위기 조성
- ☞ 법무부장관 명의의 K-Trust기업 로고를 부여하여 기업인에게 긍정적 평판 제공

- * (신뢰 등급 부여 기준) i)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노동법 위반 여부 ii) 숙소·안전·위생관리 iii) 외국인력 근속률·재고용률 등
- ** (인센티브) A등급 기업에게 고용 쿼터 20~30% 추가 허용, 외국인 등록·체류연장 신속승인(Fast Track)하고, B등급 기업에게 현행 유지, C등급(불법 고용) 기업에게는 신규고용 제한 및 개선 명령(집중 점검)
- ※ (해외사례) 덴마크 이민통합부 산하 SIRI(취업통합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기업은 고속권 외국인 채용 시 신속유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Fast-track 적용, 호주 내무부에서 인증한 Accredited Sponsor(인증 스폰서)는 비자 심사에 우선처리 혜택 부여

- (보이는 치안 활동) 단속 예고, 외국인 커뮤니티 활용 정보수집을 통한 동향 파악, 차량* 순찰(Immigration Patrol Car) 강화 등으로 범죄예방 및 억제
- * '25. 12.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순찰차 16대 보유 → 순찰차 20대(서울청, 인천청, 부산청, 수원청 각 1대씩 추가) 증차 추진
- ※ 시민이 체감하는 형태의 순찰, 제복착용, 치안 홍보 등의 가시적 활동은 범죄예방과 주민 심리안정이라는 이중적 효과('19. 경찰학연구(박기태))

5 반(反) 이민정서·갈등 중재 및 외국인 권익보호

1 반(反) 이민정서 대응·예방 체계 마련

현장의 목소리

- ◇ 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확산*, 정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반이민정서**가 강화되고 있으나, 제도적·사회적 대응은 미흡
- * "전산망 마비로 중범죄자들 입국, 국가위기 속 '가짜뉴스' 판쳐"('25.9. 문화일보)
- ** (성인 다문화수용성, 여가부) '15년 53.95점→'18년 52.81점→'21년 52.27점→'24년 53.38점

- (개선) 사회 전반의 반(反) 이민정서 및 동포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갈등 관리·예방 시스템 마련
- (갈등 예방) 체류외국인 증가 및 이민정책 활용 확대에 따른 내·외국인 간 갈등이 구조화·고착화 되지 않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체계를 활용하여 해법 모색
- ※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 사건...유엔 인권차별철폐위 "한국정부가 해결 권고"'('25.4. 연합뉴스), 서울 도심 활보한 혐종시위... 원색적 욕설에 몸 피한 中관광객('25.9. 연합뉴스) vs. '크루즈' 타고 온 2천명 유커...들뜬 명동 "그 고객들 손이 커"'('25.9. 한겨레신문)
- (국회와 소통 강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정례적인 국회 보고 절차 마련

국회보고 절차 관련 국내·외 사례

- (국내)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성평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건강가정 기본계획(성평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문화유산 기본계획(문화재청, 문화유산법 제7조의2) 등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제출 절차를 두고 있음
- (해외) 캐나다는 매년 이민통계와 향후 3년간 이민수용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캐나다 이민법 제94조), 미국은 옴부즈맨이 USCIS(국적·이민서비스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고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국민수용성 제고) 주기적(3년)으로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측정하여 국민인식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설계에 반영
 - * 이민 확대에 대한 인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수용성, 이민자 대상 태도, 이민자 지원범위 의견 등
- (동포 인식 개선)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23개)를 통해 국민의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활동 추진
 - ※ (활동 예시) 동포-지역주민 교류 행사, 동포와 함께하는 지역봉사 활동, 동포의 취업·창업 성공사례 홍보, '동포에 관한 오해와 진실' 카드뉴스 제작 등

② 장기거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및 참여 촉진

현장의 목소리

- ◇ 체류외국인 증가와 체류유형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접근성이 부족해 사회적응교육 기회가 제한*
 - * "일하는 평일에 몰린 한국어 수업, 이주 노동자 발동동"(25.3.19. 강원 MBC,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변화 및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 제안(25. 4. 25. 전국 사회통합업무 담당자 간담회)
 -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15년 25,795명 → '25년 90,180명(3.5배 증가)
- ◇ 사회통합은 법질서 준수, 한국어 습득 등 외국인의 기본 의무를 전제로 한 자발적 통합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성과는 이민정책적 인센티브(비자·체류·귀화 등)와 연동 필요

- (개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의무화, 체류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예방
 - ※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총괄부처로, 사회통합교육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적 수단(비자발급, 체류허가, 귀화허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교육 의무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일정단계 이상을 이수해야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부여
 - * 정주형 체류자격부터 우선 의무화하고, 체류기간별 사회통합 요구 수준에 따라 단계별 확대
 - ※ (해외사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가 교육 의무화 시행 중
- (맞춤형 교육) 입국 전 외국인, 동포, 유학생, 동반가족 등 체류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입국 전 외국인)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이 입국 전에 기초 한국어 등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구축
 - (동포) 동포특화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 (유학생) 참여 희망 대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규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행 단계당 100시간을 45시간으로 조정 → 유학생이 재학 중 사회적응을 쉽게 받도록 하여 졸업 후 신속 정착 유도
 - ※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25년 10,411명(총 참여자 90,180명의 11.5%)

- (동반가족) '23년부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35,000명)가 대폭 확대되면서 E-7-4의 동반가족(F-3-74) 증가에 대응한 별도 특별반 편성

* (체류현황) '25. 12. 숙련기능인력(E-7-4) 40,858명, 동반(F-3-74, '24. 6월 코드 신설) 13,564명

- (AI 활용) 교육 효과성 제고와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AI 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 AI 기반 레벨테스트,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24시간 학습 보조 등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교육·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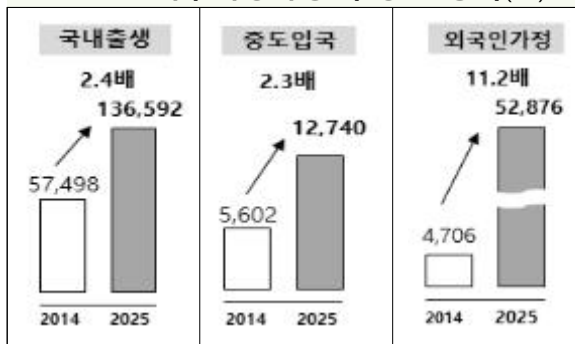
현장의 목소리

- ◇ 이주배경학생 규모가 지속 증가* 중이나,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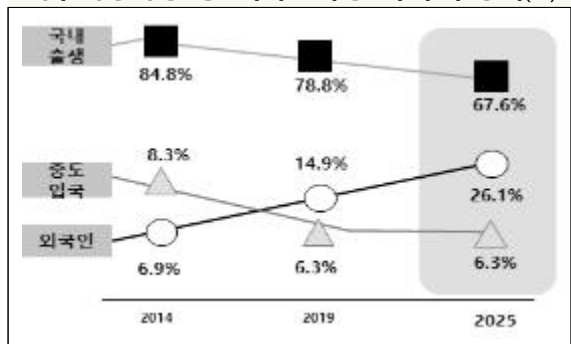
* ↑ (이주배경학생) ('14.) 67,806명 → ('25.) 202,208명 ↗ 3배 증가

↳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 구성비율) ('14.) 6.9% → ('25.) 26.1%(3.8배 증가)

10년간 이주배경학생 구성별 증가(명)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 구성비(%)



※ 이주배경 청소년 절반 "친구들만큼 학교생활·공부 못했다"('25. 9. 2. 연합뉴스)

- (개선) 입국시기, 체류자격 등 이주배경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과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한국어 교육) 외국인가정 자녀*의 초기 적응**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강화 추진

* '14년 4,706명 → '25년 52,876명으로 11배 증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로서 국내출생 이주배경 자녀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공교육 진입·적응이 어려우며, 재학률 또한 낮음(부모 일터 따라 한국 온 아이들 "말 못알아들어 학교가 괴로워요", '25.10. 21. 한겨레)

※ 초·중등학교 방과후 학습 시간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 (공교육 진입) 법무부, 교육부 등 부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 출신 자녀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진입 안내 자료 개발·보급
- (멘토) 다문화사회 전문가, 사회통합 멘토단 등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 지원

※ '25. 12월 다문화사회 전문가 12,185명, 멘토단 39명

- (인식 개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홍보대사로 위촉 및 유튜브 등 활용 대국민 홍보
 ※ (사례) '17년 여가부 모델 한현민을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25년 충주시 글로벌 소통 능력 갖춘 인도 출신 청소년(삼희 코폴라)을 홍보대사로 위촉
- (용어 및 통계 정비) 부처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칭 용어를 통일성 있게 재정의하고 통계 기준을 정립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또는 중도입국자녀(법무부),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이주배경 청소년(성평등부), 외국인주민 자녀(행안부), 이주배경 학생(교육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지원 체계) 외국인정책 실무분과위원회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분과'를 운영하여 법무처 협력 체계 구축
 * (위원 부처) 법무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동포청 등으로 구성

4 외국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 확충

현장의 목소리

- ◇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권익구제 절차 접근이 어렵고, 실효적인 구제 수단 미비
 * 최근 5년간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액은 매년 평균 1,200억원(노동부),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묶고 조롱"('25. 7. YTN)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25. 7. 24. 수석·보좌관 회의, 대통령 말씀)

○ (개선) 침해 외국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실질적 권리 보장

- (권익증진협의회 제도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 창구 상설 운영을 통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피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 보장

* 현재는 지침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지방) 100회, (중앙) 8회 협의회 개최

☞ 외국인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의 착취, 인권침해를 상정안건으로 추가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도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허용하고, 필요시 피해구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 합법적 체류자격 부여

- (임금체불 해결 지원)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고, 무료 법률·노무상담** 강화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개정 추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114명) 활용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은 불법체류 중이라도 강제퇴거 위험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됨('25. 11.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VI. 추진기반(조직·재원) 마련

① (조직) 이민정책 전담조직 확대·강화

그간의 정책 상황

◇ 현재 조직*으로는 인구위기 대응, 해외 인재 유치, 동포 포용, 지역균형 성장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 및 포용적·통합적 관점에서의 이민정책 수립에 근본적 한계

* '07년 출입국관리국(2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급, 2개단)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07년 대비 체류외국인 증가(106만명 → 278만명) 등 정책여건 변화

※ ('25. 11. 문체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민정책 전담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3%로 나타남('22. 코리아리서치 조사 65%, '24.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68.6%)

○ (개선) 법무부의 이민정책 전담 조직 확대·강화를 통해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기조에 맞춘 이민정책 추진

※ (언론동향) 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립 요구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

- (본부 확대 개편) 외청 설치 시의 부담 및 법무부장관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정책의 일관성, 장래적 관점의 행정수요·업무 대응을 위해 現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 확대와 기능 신설

※ (참고 사례) ①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1조정관, 3국) ②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4실) ③산업부 통상교섭본부(1차관보, 3국) ④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실, 1국) 등 본부장은 차관급(정무직)

② (재원) 사회통합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그간의 정책 상황

◇ 외국인 사회적응 지원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 반감 및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속성 확보가 곤란

※ (해외사례) 미국 이민심사수수료계정(Immigration Examinations Fee Account): '24. 약8조 4천억원, 캐나다 영주권정착 수수료(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ee): '24. 약 1,577억원, EU 난민이주 기금(Asylum and Migration Fund), 독일 난민이주통합 기금(Asylum, Migration and Integration Fund)

○ (개선)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반감 해소를 위해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중장기 검토

※ '25. 12. 23.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 내용이 포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민주당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

참고 1

외국인 유입과 정책 전개과정

구분	2000년대	⇒	2010년대	⇒	2020년대	⇒	2030년대 (예상)
거주현황	비전문인력 중심 ▶ 체류외국인 49만('00.) → 117만명('09.)으로 급증 ▶ 국제결혼, 제조업 등 비전문인력이 다수		외국인 증가 다변화 ▶ 체류외국인 128만('10.) → 252만('19.)으로 지속 증가 ▶ 체류외국인 다변화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F-4, H-2), 난민 신청자 등]		이민정책 이슈화 ▶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일시감소[195만('21.)] 후 회복[273만('25.)] ▶ 전문인력유학생이 증가 하였으나, 비전문인력 수요도 여전		인재유치/경제성장 ▶ 체류외국인 300만 이상 ▶ 고령화·저출산 심화 및 AI·자동화로 저숙련 인력은 일부 대체하되, 첨단우수인재 경쟁 증가 사회통합 ▶ 가족 동반 및 이민 2세대 증가(이민2세대 '22년 33만명 → '42년 약 67만명(통계청), 국내 대학에 유학생 증가
국내제도	초기 제도 정비기 ▶ 산업연수생 제도(법무부) 폐지 후, 고용허가제(노동부) 도입('04)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07.) ▶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09.)		외연 확대기 ▶ 투자이민 제도 도입('10) ▶ 제2차('13.), 제3차('18.)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 난민법 시행('13.) ▶ 재외동포(F-4)의 범위 확대 (기존 3세대 → 4세대 이상) ('19.)		추진체계 재정비기 ▶ 출입국·이민 관리청 등 이민관련 컨트롤 타워 본격 논의('22. ~) ▶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 확대('23.)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 신(新)출입국 이민정책 발표('24. 9.)		성장 및 공존 ▶ 인구소멸,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추진 ▶ 외국인과 주민 간 갈등 조정 ▶ 지역·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비자·이민정책 활용
외국사례	이민제도 정비기 ▶ (독일) 이민법 제정으로 이민국가로의 전환 명문화('05.) ▶ (미국) 9.11. 계기로 국토안보부 신설(DHS) ('02) ※ 시민권이민국(CIS), 세관 이민집행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출범('03.) ▶ (EU)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블루카드 도입 ('09.)		인재유치개방·통합강화 ▶ (미국) DACA(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등 개방적 이민정책('12.) → 트럼프 정부 1기 반이민정책으로 선회('16.) ▶ (일본)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기능 인력 제도 도입('19.) ※ 유럽 등 일부 후발 이민 국가 다문화 실패 선언 후 통합정책 강화('11)		관리강화 ▶ (미국) 친이민정책 (바이든 정부) → 반 이민정책(트럼프 정부) ▶ (독일)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기술인력 이민법 도입했으나('23.), 최근 메르츠 총리는 강경이민 정책으로 선회('25. 5.) ▶ (캐나다) 50만명 이상 이민자 유치 목표를 발표했으나('22.), 최근 유학생 신규허가 상한 도입 등 제한적 이민정책 선회('24.)		이민과 반이민의 상충 ▶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 VS. ▶ 반이민정서 확산, 사회통합 실패로 이민장벽 강화

가. 전체 체류외국인



나. 장·단기 체류외국인



< 주요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추이(2015~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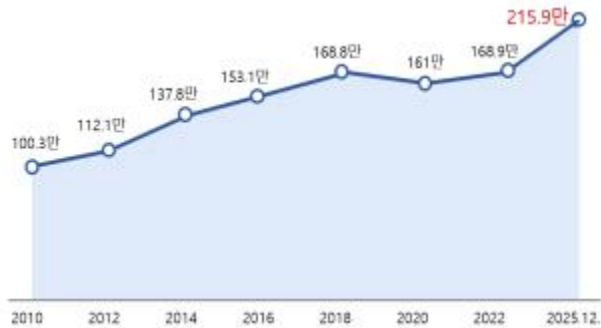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연 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 계		190.0	204.9	218.0	236.8	252.5	2036	195.7	224.6	250.8	265.1	278.3	
장기체류	소계	146.8 (77.3%)	153.1 (74.7%)	158.3 (72.6%)	168.8 (71.3%)	173.2 (68.6%)	161.0 (79.1%)	157.0 (80.2%)	168.9 (75.2%)	188.2 (75.0%)	204.2 (77.0%)	215.9 (77.6%)	
	유학 (D2,D41,D47)	9.4 (5.0%)	11.2 (5.4%)	13.0 (6.0%)	15.6 (6.6%)	17.5 (6.9%)	14.9 (7.3%)	15.8 (8.1%)	19.1 (8.5%)	21.9 (8.7%)	25.5 (9.6%)	30.1 (10.8%)	
	취업	전문 (E1~E7)	4.7 (2.5%)	4.7 (2.3%)	4.5 (2.0%)	4.5 (1.9%)	4.4 (1.7%)	4.0 (2.0%)	4.3 (2.2%)	4.8 (2.1%)	6.9 (2.7%)	8.6 (3.2%)	10.4 (3.7%)
		비전문 (B3~E10)	28.6 (15.0%)	28.9 (14.1%)	28.9 (13.2%)	29.2 (12.3%)	28.8 (11.4%)	25.1 (12.3%)	23.1 (11.8%)	27.4 (12.2%)	33.1 (13.2%)	36.9 (13.9%)	38.9 (14.0%)
	동반 (F3)	2.2 (1.2%)	2.3 (1.1%)	2.2 (1.0%)	2.2 (0.9%)	2.2 (0.9%)	2.0 (1.0%)	2.1 (1.0%)	2.4 (1.1%)	3.0 (1.2%)	5.1 (1.9%)	7.4 (2.7%)	
	동포 (H2,F4)	60.8 (32.0%)	61.9 (30.2%)	63.7 (29.2%)	68.7 (29.0%)	68.4 (27.1%)	61.7 (30.3%)	59.9 (30.6%)	60.2 (26.8%)	63.5 (25.3%)	64.5 (24.4%)	63.5 (22.8%)	
	영주 (F5(F52제외))	9.8 (5.1%)	10.3 (5.0%)	10.6 (4.9%)	11.1 (4.7%)	12.0 (4.8%)	12.8 (6.3%)	13.5 (6.9%)	14.4 (6.4%)	15.4 (6.1%)	17.1 (6.4%)	18.9 (6.8%)	
	결혼 (F6,F21,F52)	15.0 (7.9%)	15.1 (7.3%)	15.4 (7.0%)	15.7 (6.6%)	16.4 (6.5%)	16.7 (8.2%)	16.7 (8.5%)	16.8 (7.5%)	17.3 (6.9%)	18.0 (6.8%)	18.6 (6.7%)	
	기타	16.3 (8.6%)	18.9 (9.2%)	20.0 (9.2%)	21.8 (9.2%)	23.4 (9.3%)	23.8 (11.7%)	21.6 (11.1%)	23.7 (10.6%)	27.1 (10.8%)	28.4 (10.7%)	28.0 (10.1%)	
	단기체류		43.2 (22.7%)	51.9 (25.3%)	59.7 (27.4%)	68.0 (28.7%)	79.3 (31.4%)	42.6 (20.9%)	38.7 (19.8%)	55.7 (24.8%)	62.6 (25.0%)	60.9 (23.0%)	62.4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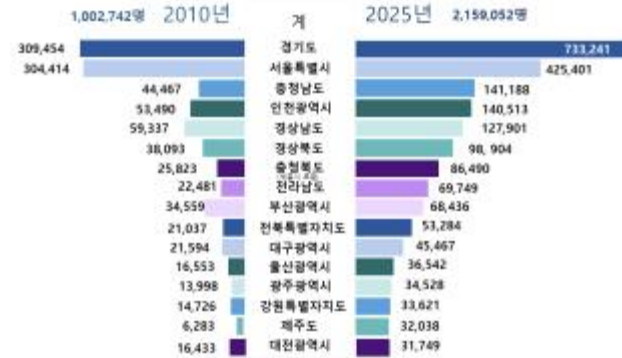
※ 유의 : 각 수치는 반올림되어 표 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전체 장기체류외국인

① 연도별 추이



② 지역별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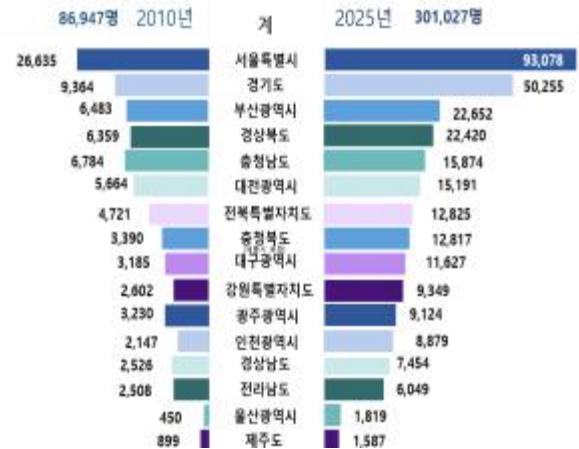
라. 유학생(유학(D-2), 연수(D-4) 등)

① 연도별 추이



② 지역별 분포 변화

< 지역별 외국인유학생 분포 변화 >



마. 외국인력(E계열 취업비자)

① 연도별 추이



② 지역별 분포 변화

